

#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과 보완입법 과제

권 오 성\*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적 해석을 위해서는 형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공법인이나 공공기관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행정조직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조문의 수가 16개에 불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을 두고 다양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법영역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 1. 머리말

20세기 산업사회의 성장은 대규모 자본집적을 가능하게 한 주식회사 제도에 힘입은 바 크다. 주식회사가 담당할 순기능도 작지 않지만, 동시에 주식회사는 그 이윤은 회사의 주주에게 독점 시키되 비용은 사회에 전가하는 경향도 보여 왔다. 후자가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ESG 경영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는 이유이다.

종래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면 그 사업주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하였고, 일반 시민이 죽거나 다치면 그 행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하였다. 그러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도 실제 처벌은 무겁지 않았다. 나아가, 경영구조가 증층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 즉 중대재해의 예방 및 제재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강해져 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나 태안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oskwon@sungshin.ac.kr).

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건 등을 겪으면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이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구조가 다층화된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상위 경영진에게 묻는 것이 어렵다는 모순적 상황은 여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나 법인의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함으로써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사업주나 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나 시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사업주나 법인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조문 수가 16개에 불과한 매우 간단한 법률이다. 하지만 실제 동법의 해석 및 집행에 있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범자(受範者)가 누구인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위반이나 중대재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고의(故意)가 요구되는지,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는지 등 다양한 해석상 쟁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계와 일부 법조 실무자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이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이 모호하여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거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법정형(法定刑)이 너무 과도하여 책임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향후 동법의 위헌(違憲)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하였다.

필자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다소 생경한 구조의 법률 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찬반의 양론이 가능하며, 특히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적 정합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경청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매년 1,000명 가까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그러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를 통하여 중대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동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유족의 응보(應報) 감정을 고려할 때, 종래의 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벼웠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상 이론적 정합성에 천착하여 동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기보다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중대재해 발생의 예방이라는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석론을 모색하는 것이 법학자가 풀어나갈 숙제라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법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은 다른 법률에서 빌려온 것들이 많다.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사법 기타 단체에 관한 법률의 내용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주가 공법인이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조직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법정 부가배상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이론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문의 수가 16개에 불과한, 일견 매우 간단해 보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양한 법영역에 대한 선행적인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 II.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 1. 중대재해처벌법과 형사법의 기본원칙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경영계로부터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①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개념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거나, ② 동법의 법정형이 과도하여 책임주의 원칙<sup>1)</sup>에 위배한다는 것이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정의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조문 구조,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개념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규범적 용어의 개념의 외연은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의 축적으로 명확성을 갖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과도하다. 만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순수한 ‘과실범’을 처벌하는 법률로 본다면 순수한 과실범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중대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형벌권이 발동한

1) 책임주의 원칙이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법언(法諺)에 따라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형량도 책임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 즉,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고의로’로 위반했다는 행위불법과 ‘중대재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불법 양자 모두가 인정될 때에만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되는 구조이다. 다음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라는 ‘행위’와 중대재해의 발생이라는 ‘결과’ 사이에 (규범적) 인과관계가 긍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등의 이례적인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부정되어 처벌에 이르기 어렵다. 나아가,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정’에 따른 감경도 가능하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실제 처벌의 수준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위반 정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2.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규정의 타당성

중대재해를 야기한 법인 사업주를 처벌하면 되는데, 사업주인 법인에 더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기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여야 하는가라는 불만도 있는 것 같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경영책임자등 외에 법인기업도 벌금형의 제재를 받기는 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법인’은 영(靈)과 육(肉)이 없는 법적 의제(legal fiction)이다. 따라서 법인은 그 목적과 관련한 범위에서 권리능력이 있을 뿐,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인과 관련된 사람이다. 그래서 대륙법의 전통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 물론, 필자도 기업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일반적으로 긍정하는 방향의 형법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면적인 형법개정을 통해 자연인에 대한 사형이나 자유형에 상응하여 법인의 해산이나 영업정지를 형벌로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법인에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나아가 법인 자체를 해산할 경우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 이외에 그 법인과 관련한 선량한 근로자, 주주, 회사채권자에게 미치는 손실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범죄의 처벌에 관한 딜레마에 대하여 미국의 엔론(Enron)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새뮤얼 부엘은 2016년에 쓴 『기업범죄: 미국의 회사의 시대에 기업범죄와 처벌』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sup>2)</sup>

“범죄자로서의 기업이라는 발상은 수수께끼 같다. 특히 학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감옥에 가둘 수 없다. 그리고 기업은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기업은 법에 규정된 살인, 폭행, 절도, 사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

2) Buell, Samuel W.(2016), *Capital Offenses: Business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s Corporate Age*, W.W. Norton & Co.

는 데 필요한 영(靈)과 육(肉)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기업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뿐이므로, 법은 그러한 사람들만 처벌해야 한다. …… 엔론 사건에서 아서 앤더슨 회계법인인 이 기소되어 폐업했을 때 발생한 낭비를 보라.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富)를 쓸어버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와 퇴직연금을 날려버릴 수 있다. …… (그러나) 대륙붕이나 쉐비(Chevy)와 새턴(Saturn) 사고들은 그 종업원들을 사용하여 그러한 재앙을 야기한 기업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 이것이 기업의 형사 책임의 딜레마이다. 기업들을 감옥에 가둘 수 없더라도, 어떤 기업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 그러한 딜레마에 대한 신묘한 해결책은 없다. 다만, 이상적인 접근법과 그보다 덜 이상적인 접근법 사이의 선택만이 있다.”

회사의 채권자는 물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주주도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근로자도 경영책임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법 체계 아래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벌을 예정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준수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법인기업에 의한 중대재해의 발생을 억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 3.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해석론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사업주의 경우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여 법인을 직접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다. 동법은 경영책임자등(제2조 제9호)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직접적인 행위자로 처벌하고, 양벌규정을 통하여 법인사업주를 처벌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수범자로 법정(法定)된 자연인이다. 그러므로 ‘경영책임자등’의 지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sup>3)</sup>의 구성요건적 신분(身分)<sup>4)</sup>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영책임자등에

3)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1264호, 2022. 1. 27., 일부개정]의 [별표 5]는 중대재해 유형(중대산업·시민재해) 및 발생된 결과(사망 또는 상해)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적용할 죄명(罪名)을 아래 표와 같이 신설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을 해당 조문	죄명 표시
제6조 제1항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제6조 제2항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
제10조 제1항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민재해치사)
제10조 제2항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민재해치상)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각 목은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정의한다. 위 조항의 전단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먼저 어문법칙에 따라 위 문구의 구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말은 사실의 차원이 아니라 규범의 차원에서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을 대표할 권한과 책임, 즉 대표권(代表權)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표이사로 등기되지 않은 대주주 등이 ‘총수(總帥)’ 등의 명목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이러한 자들은 법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거나 사업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자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교정(矯正)이 필요한 ‘탈법적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법 제401조의2<sup>5)</sup> 소정의 업무집행지시자 등 법률상 권한이 없음에도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산업재해치사상죄(제6조 제1항 및 제2항) 및 시민재해치사상죄(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sup>6)</sup>이나 교사범(형법 제31조 제1항)<sup>7)</sup>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 4) 범죄구성요건이 그 행위의 주체로서 일정한 신분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범죄를 신분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분은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의미한다.
- 5)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 12. 29.>
  -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8. 12. 28.]
- 6)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7)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후단은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이에 준하여’라는 말은 문언상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률상 대표권은 없지만 특정 사업부문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 받아 해당 사업 부문의 외부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대표자에 준하여 대외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또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활동을 총괄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정도가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위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최고안전책임자(chief safety officer : CSO)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는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을 평가받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따라서 상법은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그 의사와 상관없이 대표권이라는 포괄적·정형적·불가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평이사라든가 상업사용인 기타 제3자에게 항구적으로 위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게 하는 것은 대표이사제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sup>8)</sup>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전단적(專斷的)으로 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고 그에게 자신의 대표권 전부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소위 최고안전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는 해석이야말로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후단의 “이에 준하여”라는 문구에 대한 문리적(文理的)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그 명칭이 무엇이 되었든 대표이사로부터 그 권한의 일부만을 위임받은 수임인(受任人)이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보기 어렵다.

## Ⅲ. 약간의 입법론

### 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8) 권기범(2014), 『현대회사법론』, 제5판, 삼지원, p.903.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또는’의 해석이 문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하나의 사회적 실체로 인정되려면 대표기관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의 의미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잔여적으로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후단 부분은 대표이사가 유고(有故)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다. 반대로,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람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보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경영책임자등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경영책임자등의 원칙적인 형태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가별성을 신분(身分)의 단계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거칠게 말하면, 이러한 해석은 대표이사가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엄폐물 뒤에 숨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허용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 부분의 해석에 관한 이러한 논란은 ‘person’과 ‘persons’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영어와 달리 ‘사람’과 ‘사람들’, ‘자’와 ‘자 등’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언어관행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가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등(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오히려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수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외에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한 것은 동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수범자를 확장하려는 취지로 보아야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중 ‘또는’이라는 문구는 전단과 후단을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법조문이 굳이 미문(美文)일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특히 형사범의 경우 의미가 모호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상 논란의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공부문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그 경영책임자등을 누구로 볼 것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은 헌법기관이나 공법인 전부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법원(法院)이나 국회(國會)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그 경영책임자등이 누구인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법원이나 국회 등의 헌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열거되지 않은 헌법기관이나 공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으로 돌아가 그러한 헌법기관이나 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하면서 법원이나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은 것은 조약한 입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입법을 통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 2. 비법인 단체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문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모 정당(政黨)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정당 법상 정당과 같은 ‘비법인 단체’에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 자체를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 그러한 단체의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래 판례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형법상 취급에 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라는 입장<sup>9)</sup>이므로, 법인격 없는 단체를 처벌한다는 명시적인 입법이 없는 이상 법인격 없는 단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양벌규정을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와 제11조에서도 ‘법인 또는 기관’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처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법인격 없는 단체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만일, 입법자의 의사가 법인격 없는 단체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었다면, 법조문을 잘못 만든 것이다. ‘법인 또는 기관’에서 ‘기관’이라는 문구에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적어도 형사법규의 해석으로는 찬성하기 어렵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를 참고하여 비법인 단체를 수형(受刑)의 주체로 명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정안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되는 사고 발생 시기(행위시)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시기가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사고 시에

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5명 이상인 사업이었지만 사고 이후 5명 미만으로 근로자의 수가 줄어든 경우 동법 제2장의 규정이 적용되는가이다.

예컨대, 10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모두 해고한 다음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만일 이러한 사안에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시점에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로자의 수를 5인 미만으로 감소시키면 처벌을 면한다는 어이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적어도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하는 법률은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만일 동 조항의 삭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적어도 “사고 발생 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KLI](#)

### [참고문헌]

권기범(2014), 『현대회사법론』, 제5판, 삼지원.

권오성(2022),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도서출판 새빛.

Buell, Samuel W.(2016), *Capital Offenses: Business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s Corporate Age*, W.W. Norton & Co.